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0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20.

발의자 : 송옥주 · 김정우 · 신창현
김종민 · 김관영 · 서형수
윤관석 · 김수민 · 김영호
이용득 · 원혜영 · 한정애
소병훈 · 김영춘 · 강병원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하고,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,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·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이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

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,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제3호 신설).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

법률 제1448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의 제목 중 “등에 대한”을 “등의 설비기준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”를 “취약계층 이용시설의”로, “그 다중이용시설의”를 “취약계층 이용시설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①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이용시설(이하 “취약계층 이용시설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3.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·운영 비용 지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개선명령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개선명령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 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이 공기 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소유 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측 정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.
법률 제1448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에 대한 지원) <u><신 설></u>	법률 제1448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의 설비기준 및 지원) ① 어린 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 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 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 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다중이용시설(이하 “취약 계층 이용시설”이라 한다)의

<p><u>①</u>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(생 략)</p> <p><u>②</u> (생 략)</p>	<p><u>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</u> ----- ---<u>취약계층 이용시설의</u>----- ----- ----- ---<u>취약계층 이용시설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·운영 비용 지원</u></p> <p><u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u></p> <p>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--	---